

# NEWS LETTER

2024-08-16

## Legal Issue

- 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
- 우주에도 영토가 있을까, 화성에서 채굴한 자원은 누구의 것일까? - 우주 영토권과 우주자원의 소유권

## MINWHO News

-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 받고 추징 면제 받아
-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승소 결정



## Legal Issue

### 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

김경환 대표변호사

#### 1. 가상자산을 빌려줄 때 이자를 붙일 수 있을까? 이율에 제한이 있을까?

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할 수 있는가, 이자를 약정할 수 있다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도 관련이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입법자가 가상자산을 보는 태도도 같이 고려해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 2. 가상자산 대여시 이율에 대한 법원의 판례: 금전에 대한 최고이율 규정 적용 안 됨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1677 판결(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은 가상자산 대여시 이율에 대해 판단한 사례인바, 일단 해당 판례 사안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30개의 비트코인을 대여해(빌려) 주었다. 이때 이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율을 월 5%로 정했다가 월 2.5%로 조정했고 이를 다시 연 10%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30개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1개당 26,54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1]>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월 5% 또는 월 2.5%로 기 지급한 이자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기에 초과 지급한 이자 비트코인만큼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은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금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화폐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가상자산은 사적으로 발행되고 임의적 합의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계 다수 또는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 통화 또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금전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예컨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소송촉진법 등).

### **4. 참고로, 가상자산은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라고 해서 물건(특정물 또는 종류물)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일본 법원은 2015년 마운트콕스 해킹 사건에서 가상자산 예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부인함으로써, 가상자산은 유체성과 배타적 관리성이 없어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4927 판결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한 종류물채권에 관한 규정이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물건에 관한 법률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예컨대 저장권, 유치권 등).

## 5. 다만 가상자산의 재산권성은 부정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님에도 물수의 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다만 금전이나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가상자산의 재산권성 또는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역시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성을 인정하면서 형법상 물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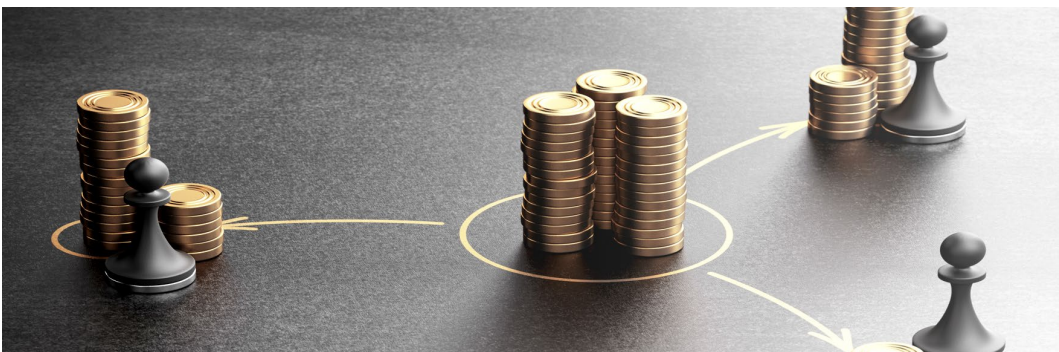
## 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위 결론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태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규정하여 '금전'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달리(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5조 참조, 금융위원회는 예치금이용료에 대하여 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국세청은 예치금이용료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유권해석함),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예치금과 달리 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예금이라는 용어가 아닌 '보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제7조 참조).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보면,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에서도 위 판례의 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에 약정된 이자를 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다만 일부 범용성이 큰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현금 대용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바, 정책적으로는 가상자산의 경우도 최고이자율 제한을 규정할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각주:

1. 참고로 위 판결은, "피고들이 위 비트코인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7. 5. 무렵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는 비트코인 1개당 26,54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비트코인 30개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1개당 26,54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피고에 대해 비트코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소송 변론종결일 당시의 비트코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김경환 변호사 네플라(NEPLA) 기고문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 Legal Issue

# 우주에도 영토가 있을까, 화성에서 채굴한 자원은 누구의 것일까? - 우주 영토권과 우주자원의 소유권

김경환 대표변호사

### 1.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여 다시 시작된 우주 개발 경쟁

1957년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은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우주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우주개발 경쟁은, 최근 러시아가 주춤한 가운데 민간 기업의 참여로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다.

예컨대 2010년대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엑스와 블루 오리진은 로켓 재활용을 위한 수직 착륙 기술의 실험 성공을 알리며 새로운 우주 경쟁 시대의 서막을 알렸으며, 2015년 12월 스페이스 엑스의 실사용 로켓인 팰컨9이 최초로 발사 후 육상 착륙에 성공하며 이 기술의 실용화를 알렸다.

우주경쟁의 새로운 개시는 미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통해, 2017년부터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여, 인류 최초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의 후속사업으로서 **유인 달 탐사 및 우주정거장 설치라는 초거대계획인 ‘아르테미스’를 가동**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화성 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2022년 1단계 무인 발사 임무를 성공한 이후, 현재 2단계 유인 달 궤도 비행 임무를 준비 중이고, 2030년 달 표면에 상주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도 미국 정부와 함께 유인 달 탐사라는 큰 꿈을 실행 중에 있다.

미국은 **‘Moon First’ 정책을 쓰고 있지만, 화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2월 화성 지상 탐사차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여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 인간 정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우주기업 스페이스 엑스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 우주선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비행을 성공하며 원대한 화성 개발을 꿈꾸고 있다.

다른 나라도 우주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도는 2014년 9월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의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이래 2023년 8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중국**은 2019년 창어 4호로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고, 2020년 창어 5호로 달 앞면에서 표면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에 복귀하였으며, 2022년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건설했고, 2024년 6월 달 탐사선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2030년까지 달 남극의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텐웬1호 화성 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켰고, 2021년 주룽이라는 화성 탐사차를 화성에 착륙시킨 바 있다.

**일본**의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는 2024년 6월 무인 달 착륙에 성공하여,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되었고, 2026년 화성 궤도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는 2021년 화성 탐사선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고, 2117년에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2. 달이나 화성을 개발하면 누구의 영토? 채굴한 자원은 누구의 소유?

이런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달이나 화성에 기지나 도시를 구축하고, 광물 등 자원을 채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구역은 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는지, 법적으로 광물 등 자원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 [우주 헌법 '우주조약'은 특정국의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궁금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1967년 체결되고 2024년 6월 현재 우리나라 포함 115개국<sup>[1]</sup>이 참여하고 있는 '우주조약'**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우주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1967년 발효된 우주 관련 최초의 조약**으로서, 평화로운 우주활동에 관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우주조약은 우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비전유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우주조약 제1조, 제2조, 제12조에 의하면 우주는 특정 지역을 점유하는 국가의 전유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주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하여야 하고, 달과 기타 천체상의 모든 배치소, 시설, 장비 및 우주선은 호혜주의 원칙하에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대표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 우주조약에 의하면, 특정 지역을 개발하고 점유한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국가는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우주조약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당시로서는 우주개발은 국가 또는 주권의 개념 하에서 상정되었지만, 지금은 민간에 의한 우주 개발이나 이주자의 자유나 인권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사유영역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우주 개척이나 투자 유치에 장애물이 되거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와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법적으로 소유금지 조항은 사유재산을 긍정하는 유엔인권선언과도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우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결국 강대국에 의한 과거의 식민지 경쟁을 반복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여하튼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주조약 문언에 입각해서 보건대 우주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토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달협정'은 우주에서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 주장을 금지하지만, 우주 개발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특정인이 채취한 광물이나 자원에 대하여 그 특정인이나 특정 국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주조약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1979년 체결된 달협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식명칭은 **'달 및 기타 천체의 국가 활동을 관리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달협정의 핵심은, 달과 그것의 천연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명시한 제11조 제1항이다. 나아가 제11조 제2항은 우주조약 제2조와 동일하게 주권의 주장 금지, 국가 전유의 금지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제11조 제3항은 달의 천연자원은 그 누구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2022년 1월 기준 18개 국가가 조약 당사국으로 참여했으나 2023. 1. 5. 사우디아라비아가 탈퇴한 이후 아르테미스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선진우주개발국들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달협정은 우주 개발국가에 의하여 외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달협정에 의하면 적어도 달에서 채취한 광물이나 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려워 보이나, 우주개발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 등이 달 광물이나 달 자원을 채취하면 이 달협정을 들이밀기 어려워 보인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주자원의 활용이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필요하다는 취지를 포함하며, 서명국들은 이를 채취자에게 그 우주자원의 소유나 활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아르테미스 약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에 기지를 구축하고 달의 자원을 채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서명국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사실상 국가 또는 민간기업의 우주자원 채취, 소유권 인정이나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컨대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일본은 이러한 행보를 위해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고 2021년 12월 시행하였다. 이처럼 아르테미스 약정의 서명국의 일부는 달 탐사선 계획으로부터 얻게 되는 달 자원의 상업적 거래를 합법화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하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 국장은 일본 등의 입법은 우주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결론: 우주는 누구의 영토도 아니다. 하지만 우주자원의 소유권은 찬반 견해가 대립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주조약의 내용상 우주의 특정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와 달리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미해결 상태로서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각주:

1.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outer-space-treaty-glance>

#### **- 김경환 변호사 네플라(NEPLA) 기고문**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 MINWHO NEWS

###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 받고 추징 면제 받아

#### 무죄 판결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추징을 면제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 핵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단순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코드를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은 애초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죄는 물론 십억 원 대의 추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승소 결정

### 채권자의 권익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 침해 막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채무자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글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추가 게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게시글의 삭제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 2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http://www.minwho.kr)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